## 计八 医蜂桃 对约则子 吉州 圣松 子四 少年

보도 일시	배 포 시	배포 일시	2022. 9. 1.(목)
담당 부서	세제실 재산세제과 세제실 관세제도과	책임자	과 장 이재면(044-215-4310)
		담당자	사무관 권영민(groove@korea.kr)
		책임자	과 장 최영전(044-215-4410)
		담당자	사무관 권순배(ooh471@korea.kr)

## '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법안 및 관세 과세가격 적용환율 개선 법안 국회 기재위 의결

- □ 2022.9.1.(목)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'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관련 「종합부동산세법」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.
- □ 동 법안은 '22년 공시가격 상승(전국 평균 17.2%)에 따른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해 「새정부 경제정책방향」을 통해 추진한 사안으로서,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- (납부유예) 고령자·장기보유자 1세대 1주택에 대해 상속·증여·양도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
  - ② (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특례) 일시적 2주택, 상속주택,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
- □ 동 개정내용은 **금년 11월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**되며, **특례 대상자**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**9월초 사전안내문을 발송**할 예정입니다.
  - 특례 신청을 원하는 **납세자**는 사전안내에 따라 9.16. ~ 9.30. 기간 동안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.

- □ 또한,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 적정화를 위해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시 원화환산 적용환율을 <sup>1.</sup> 외국환매도율에서 <sup>2.</sup> 기준환율로 변경하는 내용의 「관세법」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되었습니다.
  - \* 1」 외국환은행이 고객에게 외환을 팔 때 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적용하는 환율 2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현물환(달러, 위안화)의 시장평균환율
- ※ 현재 관세법 외에 다른 세법에서는 외화환산 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적용 중
- 적용환율 변경은 **9월중 시행**될 예정이며,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· 부가가치세가 인하되어 **납세자 부담 경감** 및 **물가안정**에 **기여**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- □ 금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추후 **법사위·본회의**에 상정될 예정입니다.
  - 정부는 후속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, 사전안내 준비 등 **집행 준비**에 **차질이 없도록 만전**을 기하겠습니다.



## 참고

## 기재위 의결 법안 주요내용

(1) 고령자·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도입 (종부세법 §20의2 신설)

현 행	개 정
<신 설>	□ 1세대 1주택 고령자·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
	○ (대상) 다음의 <b>요건을 모두 충족</b> 하는 자
	- 1세대 1주택자
	-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5년 이상 보유
	- 직전 과세기간 <b>총급여 7천만원</b> (종합소득금액 6천만원) 이하
	- 해당연도 주택분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
	○ (납부특례) 납세담보 제공 시 상속·증여·양도 시점 까지 주택분 종부세 납부유예
	* 납부기한 이후 납부유예 종료 시점까지 기간 동안 이자상당액 부과
	- 요건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유예를 취소하고 세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
	<ul> <li>(절차) 납세자가 종부세 납부기한 종료일(12.15.)</li> <li>3일 전까지 납부유예 신청</li> </ul>
	-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기한 종료일까지 납부유예 승인 여부 통지

**〈개정이유〉** 납세자의 납부 부담 경감

〈적용시기〉 '22.1.1.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

(2) 일시적 **2**주택 등 **1**세대 **1**주택자 주택 수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설(종부세법 §8·9·17)

현 행	개 정		
<신 설>	□ 일시적 2주택·상속주택·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종부세 특례		
	○ <b>(대상)</b>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		
	<ul> <li>● (일시적 2주택)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 양도 전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*한 경우</li> </ul>		
	* (시행령)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		
	② (상속주택)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<sup>*</sup> 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		
	* (시행령)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		
	- 다만, <sup>①</sup> 저가주택(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, 비수도권 3억원 이하) 또는 <sup>②</sup> 소액지분(상속주택 지분 40% 이하)인 경우 기간제한 없음		
	③ (지방 저가주택) 1세대 1주택자가 지방 저가주택 <sup>*</sup> 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		
	* (시행령) 가액기준 등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에서 규정		
	○ (특례)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<b>주택 수</b> 에서 <b>제외</b> * 과세표준에는 해당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과세		
	- (기본공제) '22년 : 11억원		
	- (고령자·장기보유 세액공제) 일시적 2주택, 상속주택, 지방 저가주택 외 주택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해 적용		
	○ <b>(절차) 9.16.~9.30.</b> 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		
	○ (사후관리) 요건 미충족 시 주택 수에 합산하고 경감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추징*		
	* (시행령) (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계산한 세액 -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계산한 세액) + 이자상당가산액		

**〈개정이유〉**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과중한 세부담 적정화 **〈적용시기〉** ′22.1.1.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

(3) 과세가격 및 수출신고가격 결정 시 적용환율을 기준환율로 변경(관세법 §18)

현 행	개 정
□ 과세가격, 수출신고가격 결정 시 적용환율	□ 적용환율 변경
○ (과세가격) 외국환 매도율	○「외국환거래법」상 <u>기준환율</u> <u>또는 재정환율</u>
○ (수출가격 신고) <b>외국환 매입률</b>	○「외국환거래법」상 <u>기준환율</u> <u>또는 재정환율</u>

〈개정이유〉 타 세법과의 정합성 제고 및 납세자 부담 경감
〈적용시기〉 법 시행일 이후 수출입신고 분부터 적용